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3. .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가족과 지인들(이하 '사적이해관계자 등'이라 함)을 이용하여 민원을 사주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민원을 인지하고도 이를 직접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감사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민원사주 및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 등에서 수십 차례 거짓 증언을 반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 등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에

대한 감사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의혹에 대한 감사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공익신고자 색출을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본인의 위법사실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해온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의 보복 행위를 자행한 과정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가족과 지인들(이하 '사적이해관계자 등'이라 함)을 이용하여 민원을 사주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2023년 9월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특정 보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됨. 해당 민원에서는 서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상당수의 민원인이 류희림의 사적이해관계자 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류희림이 민원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민원을 인지하고도 이를 직접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감사

2025년 3월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는 2023년 9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에게 '쌍둥이 동생 민원'을 보고했다고 밝힘.

2023년 9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가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류희림의 쌍둥이 동생이 2023년 9월 5일 제기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류희림이 이를 심의해선 안 된다는 것임.

하지만 류희림은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후로도 최소 7차례에 걸친 방송소위 및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사적이해관계자 등이 제기한 민원을 직접 심의하였고,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민원사주 및 이해충돌방지 의

무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 등에서 수십 차례 거짓 증언을 반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 등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에 대한 감사

류희림은 본인의 위법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등에서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민원 제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수십 차례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명백한 거짓 증언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는 류희림의 부패신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난 후 류희림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함. 이는 류희림이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류희림의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의혹에 대한 감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를 도출해 류희림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공익신고자 색출을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본인의 위법사실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해온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의 보복 행위를 자행한 과정에 대한 감사

2023년 12월 류희림은 민원사주 의혹 등을 감추고,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였음. 또한 민원사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뉴스 심의 추진 등과 관련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의 보복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